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- 104호

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기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2일

금융위원회

- 다 음 -

1. 처분 대상자 : NH투자증권(주)
2. 처분 내용 : 업무의 일부정지 3월\* ('22.3.3.~'22.6.2.)  
\*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(사모펀드 신규판매)
3. 처분 사유 : 부당권유 금지 위반
4. 법적 근거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2호,  
제420조 제3항 등
5. 처분일 : 2022. 3. 2.